투자권유준칙

제정 2020.04.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 · 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투자자"란 전문성 구비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고객으로서 법 제9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고객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 이외의 자가 일반투 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4.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파생상품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가. 파상상품(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나.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각호의 금융투자상품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투자자 구분 등

제4조(방문 목적 확인)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로 본다.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제46조제2항(투자자정보 파악) 및 제3항(적합성 원칙)에 따른 의무를 회사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투자자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7조(파생상품등에 대한 특칙(적정성원칙))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파생상품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등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전자우편과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10조 및 제12조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제4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8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 및 취약한 금융소비자 여부를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일반투자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그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⑤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절차에 따른다.

⑥ 임직원등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상품만을 거래하는 투자자 및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사용하여 투자자정보를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다.

⑦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장외파생 상품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를 이용하여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제1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10조(투자권유 절차)

①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④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장외파생상품이외의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 특칙)

① 임직원은 개인인 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제10항제1호에 따른 기준과 함께 투자자의 연령과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 등을 추가로 고려한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안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특칙)

①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이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성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나.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다.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2)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가)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3) 신탁계약
(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나)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6. 투자자(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7.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④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2. 계열회사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하여야 한다.

제5장 설명의무

제14조(설명의무)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임직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이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판매전에 교부하는 경우

⑤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등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15조(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2.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 자기구의 환위험 헤지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비 율, 환헤지 대상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3.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지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 생할 수 있다는 사실
4.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비율을 달 리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임직원등은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예상수익 율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 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제16조(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①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 기준”와 같이 분류한다.

1.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2.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 성 등

②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 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제7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7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①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3.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② 임직원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투자자문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19조(투자자문업자 준수사항)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2. 투자자문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고객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제20조(투자자문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투자자 확인서》

□ 투자권유 불원(투자자정보 파악 절차 거부)확인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본인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하며, 이경우 자본시장법제46조제2항(투자자 정보 파악) 및 제3항(적합성 원칙)에 따른 의무를 귀사가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또한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행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일자 : ·　　고객의 서명 :　　서명/인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투자자 유형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 선택) 확인

본인은 투자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귀사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지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고자 하며, 귀사로부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일자 : ·　　고객의 서명 :　　서명/인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별지 2]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초고위험
(Speculative Risk)</th><th>고위험
(High risk)</th><th>중위험
(Middle Risk)</th><th>저위험
(Low Risk)</th><th>초저위험</th></tr>
<tr><th>공격투자형</th><th>적극투자형</th><th>위험중립형</th><th>안정추구형</th><th>안정형</th></tr>
<tr><td colspan="2">채 권</td><td colspan="2">투기등급 포함(BB 이하)</td><td>회사채
(BBB+~BBB-)</td><td>특수채
금융채
회사채(A-이상)</td><td>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td></tr>
<tr><td colspan="2">CD</td><td colspan="2">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됨</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CP</td><td colspan="2">B이하</td><td>A3</td><td>A2</td><td>A1</td></tr>
<tr><td rowspan="2">파생결합증권</td><td>(ELS, DLS)</td><td colspan="2">원금비보장형</td><td>원금
부분보장형</td><td>원금보장형</td><td></td></tr>
<tr><td>ELW</td><td>ELW</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 rowspan="2">주식</td><td rowspan="2">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KONEX 주식</td><td rowspan="2">주식</td><td colspan="3" rowspan="2"></td></tr>
<tr></tr>
<tr><td colspan="2">선물옵션</td><td>선물옵션</td><td colspan="4"></td></tr>
</table>

*집합투자증권의경우해당집합투자증권의투자설명서에기재된투자위험도에따라아래6단계로분류

구 분	매우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낮은 위험
	공격투자형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펀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별지 3]

《장외파생상품 적합성 기준》

<table>
<tr><th colspan="2" rowspan="2"></th><th colspan="3">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th></tr>
<tr><th>1년 미만</th><th>1년이상-3년 미만</th><th>3년 이상</th></tr>
<tr><td rowspan="2">개인</td><td>만65세 이상</td><td>금리스왑
옵션매수</td><td>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td><td>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
상품</td></tr>
<tr><td>만65세 미만</td><td>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td><td colspan="2">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td></tr>
<tr><td rowspan="2">법인 및
개인사업자</td><td>주권
비상장법인,
개인사업자</td><td colspan="2">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td><td>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
상품</td></tr>
<tr><td>주권 상장법인</td><td>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td><td colspan="2">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td></tr>
</table>

《장외파생상품 위험도 분류》

구분	상 품	설 명
주의	금리스왑, 옵션매수	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경고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위험	주의, 경고 상품을 제외한 그밖의 장외 상품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

[별지 4]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구 분 (펀드 외)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고위험 (High risk)	중위험 (Middle Risk)	저위험 (Low Risk)	초저위험
구 분 (펀드)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안 정 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공격투자형					